

1. 개정이유

척당 6명 이내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여 운영 중인 국가필수 선박 제도의 운영방식을 바꿔 2023년 11월 6일에 합의된 노·사·정 공동 선언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추어 한국인 의무승선 기준의 예외 등 세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의 예외(안 제3조)

1)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선박 수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선원의 추가 승선을 허용하던 것을 선원의 상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한국인 선원의 즉시 승선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 중임

2) 시행령 개정에 맞춰 승선기준의 예외 및 제출서류를 한국인 선원 기준으로 수정함

나. 승선기준 예외 신청 서식 변경(별지 제2호)

시행령 개정에 맞춰 승선기준 예외 신청 서식의 명칭, 신청 내용, 제출 서류 등을 한국인 선원 기준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선박등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를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의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을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으로, “외국인 선원 승선”을 “한국인 선원 승선”으로, “승인”을 “의무승선 예외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을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의 예외를”로 한다.

4. 선원의 상병(傷病)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한국인 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곤란하여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필수선박의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 예외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선박명	선박의 용도				
	국제총톤수	진수일(조선대에서 선박을 처음 물에 띄운 날)				
	선적항(국적)	현재 승선 중인 한국인 선원의 수: 직원 명 / 부원 명				
		현재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의 수: 직원 명 / 부원 명				
	상세 신청 내용					
		한국인 선원명	직급	수행 역할	하선 예정일	하선 사유
1						
2						
	외국인 선원명	직급	대체 역할	승선 예정일	하선 예정일	승선기간
1						
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선박의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의 예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신청 대상 선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등 승선 미달 및 한국인 선원 교대가 어려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승 인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u>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u>)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u>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u> 별지 제2호서식의 <u>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u>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4. <u>선박의 수리 계획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u>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연간 6개월의 범위에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u>외국인 선원</u>	제3조(<u>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의 예외</u>) ① ----- ----- --- <u>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u> - ----- ----- <u>한국인 선원 승선 의무승선 예외 승인</u>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선원의 상병(傷病)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한국인 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곤란하여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u> ② ----- ----- ----- ----- <u>한국인 선원</u>

<u>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외</u> <u>국인 선원의 승선을 승인할 수</u> 있다.	<u>의무승선의 예외를</u> ----- ----- ----.
--	--